

## ●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-0063호

저작권법 제82조,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의한 방송사업자,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, 공연을 하는 자가 (상업용)음반을 사용할 경우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4년 01월 02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## 음반제작자의 (상업용)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·디지털음성송신·공연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고시

### 1. 지정단체

분야	단체명(대표자)	주소	연락처
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	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(임백운)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, 에이스하이테크시티 3, 610호 한국연예제작자협회	☎ 02-786-7637 <a href="http://www.kepa.net">http://www.kepa.net</a>
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			
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			

### 2. 지정요건

- 가.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
- 나.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, 공연권 통합징수 요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·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
- 다. 아래 사항을 포함한 '보상관계업무 중장기('24~'27년) 발전방안'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
  - 1) 보상금 징수·분배 개선(투명성 제고 포함)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
  - 2)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'징수·분배시스템 및 보상금 시스템 및 관련 DB의 자료 유지·이관 방안'을 마련할 것
  - 3) 관리수수료를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시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
  - 4) 권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
  - 5)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'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'에 대한 "외부 의견수렴 절차" 및 "공정한 의사결정 구조"를 마련할 것

라.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 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